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000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군인복지기본법」이 개정되어, 군 주거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, 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군 숙소 관리 업무 수탁기관에의 위탁 취소 기준 신설(안 제6조의2 제8항 신설)

-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군숙소관리수탁기관에의 위탁 취소의 기준을 별표 1과 같이 명시

나. 그 밖에 군 숙소 관리 업무 수탁기관에의 위탁 취소에 필요 사항 지정 절차 신설(안 제6조의2 제9항 개정)

-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의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합의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5. 8. ~ 6. 17.)

대통령령 제 호

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 제8항을 9항으로 하고,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군속소관리수탁기관에의 위탁 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6조의2 제9항 중 “제7항까지에서”를 “제8항까지에서”로 하고, “군속소관리수탁기관의 운영 등에”를 “군속소관리수탁기관의 운영, 위탁 취소 등에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군숙소관리수탁기관의 위탁 취소의 기준(제6조의2제8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법 제9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개별기준에 따라 위탁 취소의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일 때에는 시정명령으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
		1차	2차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9조의2제2항제1호	위탁취소	
나. 수탁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	법 제9조의2제2항제2호	시정명령	위탁취소
다. 그 밖에 수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	법 제9조의2제2항제3호	시정명령	위탁취소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의2(수탁기관의 지정 등) ① ~ ⑦ (생략) <u><신설></u>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숙소관리수탁기관 지정 기준의 구체적 내용, 지정 절차와 <u>군숙소관리수탁기관의 운영 등에</u>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u><신설></u>	제6조의2(수탁기관의 지정 등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<u>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군숙소관리수탁기관에의 위탁 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</u>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숙소관리수탁기관 지정 기준의 구체적 내용, 지정 절차와 <u>군숙소관리수탁기관의 운영, 위탁 취소 등에</u>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[별표 1] <u>군숙소관리수탁기관의 위탁 취소의 기준(제6조의2제8항 관련)</u> 1. 일반기준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

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법 제9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개별기준에 따라 위탁취소의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일 때에는 시정명령으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
		1차	2차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9조의2 제2항 제1호	위탁 취소	
나. 수탁기관의 지정기준을	법 제9조의2 제2	시정명령	위탁 취소

	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	항 제 2 호		
	다. 그 밖에 수탁기관 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	법 제 9조의 2 제 2 항 제 3 호	시정 명령	위탁 취소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주거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5891